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 불합리한 법령의 상시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입법영향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정비국을 신설하면서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을 폐지하고, 법령정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 중 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밑에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 중 12명(4급 1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법제국 1개 법제관을 경제법제국 법제관으로 이관하고, 법령정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며, 기획조정관과 법제정보지원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5.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15. ~ 4.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제정보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을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제정보담당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을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협력
3. 아시아·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5.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시행
7.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재정비
8.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9.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10.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11.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법제정책총괄과, 법령정비과”를 “법제정책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제정책총괄과장, 법령정비과장”을 “법제정책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2호 중 “정비”를 “제때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개정

15.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16.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시행

17. 법령 통합·분리 기준의 수립·시행

18.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연구

19.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20.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1. 법제지 등 학술지 발간

제6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법령정비국) ① 법령정비국에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지원

과, 법령품질개선과 및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지원과장 및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불합리 법령 등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령정비 기준의 수립
4. 불합리 법령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및 분석
5. 규제개혁 등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한 법령의 발굴·정비
6. 법령정비 관련 통계 및 사례관리
7.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하여 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2. 국민 제안 사항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의 발굴·정비
3.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4. 법령 용어·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조정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수립

6.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개발

⑥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2.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3.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의 수립

4. 법령 품질 개선을 위한 법령의 조사·연구

5. 불합리한 법령의 발굴·정비 지원

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에 따른 협업체계 운영 및 일괄정비 지원

7. 그 밖에 법령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⑦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2.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 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3. 훈령·예규 등의 사전·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4. 훈령·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관리

5.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관리

6. 훈령·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관리

7. 훈령·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운영

8. 그 밖에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법령정보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령정보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운영
7.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8.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9.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11.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

12. 처 내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처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4.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총괄
 15.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
 16.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7.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제공
 19.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0.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 ⑤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
 2. 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3.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법령정보의 디지털화
 4. 법령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영
 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2.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운영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4.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및 법제정보자료 제공
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상담
6.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문
7.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개정 사항 통보
8.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관리
9. 자치법규 입안 기준 연구·수립
10. 그 밖에 자치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⑦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교육 계획 수립·시행
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보급
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제교육 지원
7. 법제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제1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한시조직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①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법제자문1담당관과 법제자문2담당관을 둔다.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제자문1담당관 및 법제자문2담당관은 각각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창구 운영 및 자문 처리절차 총괄
3.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법제자문2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 주요 국정현안 등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수행
5. 자문 사례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연구

⑤ 법제자문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자문 수행
2.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자문 수행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 자문 수행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연구 등 관련 업무
5. 법령안에 대한 입안 지원 업무
6.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별표 1 중 총 계 “240”을 “246”으로, 일반직 계 “239”를 “245”로, 서기관 “25”를 “26”으로, 행정사무관 “85”를 “89”로, 행정주사보 “3”을 “4”로 한다.

별표 2 중 총 계 “240”을 “246”으로, 일반직 계 “239”를 “245”로, 서기관 “25”를 “26”으로, 행정사무관 “84”를 “88”로, 행정주사보 “4”를 “5”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1호의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서기관 1명)은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고,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각각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별표 3]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 나등급 1명)	2027년 9월 30일까지
2. 법령정비국 2개 과	8명 (3·4급 1명, 4·5급 2명, 5급 4명, 7급 1명)	2029년 3월 31일까지
3.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1명 (4급 1명)	2027년 6월 30일까지
4. 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	1명 (7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별표 4]

법제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4조 관련)

1. 법제자문조정관(존속기한: 2029년 5월 5일)

총계	14
일반직 계	14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행정사무관	8
행정주사	1
행정주사보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 감사담당관, <u>법제정보담당관</u> , <u>법제교류협력담당관</u> , <u>국가법령</u> <u>정보센터장</u> 및 <u>전시법령정비추</u> <u>진팀장</u> 을 둔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 ----- ----- <u>법제교류협력담당관</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 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 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u>법제정보담당관</u> 및 <u>국</u> <u>가법령정보센터장</u> 은 <u>부이사관</u> · <u>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으로 보하며, <u>전시법령정비추진</u> <u>팀장</u> 은 <u>과학기술서기관</u> · <u>서기</u> <u>관</u> · <u>전산사무관</u> 또는 <u>행정사무</u> <u>관</u> 으로 보한다.	③ ----- ----- ----- ----- <u>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u> - ----- ----- -----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 다.	⑥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 좌한다.
1. <u>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u> <u>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u>	1. <u>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u> <u>총괄 · 조정 및 지원</u>
2. <u>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u>	2. <u>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 · 협</u>

토 및 총괄 조정

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 지원
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 5의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제도의 운영
6. 삭 제
7.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8.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 · 운영
9.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 · 정비
11. 삭 제
12.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
13. 삭 제
14.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 · 관리
15.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

력

3. 아시아 · 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5.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 · 시행
7.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재정비
8.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9.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10.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 · 연구
11.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축·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
의 기획·총괄

16.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
축·유지 및 관리

17.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
교·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
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19.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
국어 번역·제공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콘
텐츠의 홍보

20의2.·20의3. 삭 제

21.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
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
련된 사항

⑦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
좌한다.

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협
력

3. 아시아·아프리카 등 외국에

<삭 제>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
최

5.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
획의 수립·시행

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8. 외국 법제정보의 조사·수집
·분석 및 연구

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
제의 조사·연구

10.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협
력에 관한 사항

⑧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
좌한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

2. 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
비스의 구축 및 운영

3.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법령
정보의 디지털화

4. 법령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
체계의 구축·운영

<삭 제>

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⑨ (생략)

제6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
에 법제정책총괄과, 법령정비
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3명을 둔다.

②·③ (생략)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령정비
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
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
령 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13. (생략)

14.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
본의 작성·관리

⑦ (현행 제9항과 같음)

제6조(법제정책국) ① -----
-- 법제정책총괄과-----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

⑤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제때마련 -----

13. (현행과 같음)

14.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
구와 제정·개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5. ~ 18. (생 략)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2. 법령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업무

3.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4.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

15.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16.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시행

17. 법령 통합·분리 기준의 수립·시행

18.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연구

19.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20.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1. 법제지 등 학술지 발간

22. ~ 25. (현행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삭 제>

는 하위법령의 발굴·정비

5.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6.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발굴된 정비과제 관리 등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한 업무

9. 삭제

⑦·⑧ (생략)

<신설>

⑥·⑦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6조의2(법령정비국) ① 법령정
비국에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
비지원과, 법령품질개선과 및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

③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
지원과장 및 법령품질개선과장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

조에 따른 불합리 법령 등 법

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령정비 기준의 수립

4. 불합리 법령 정비를 위한 전

수조사 및 분석

5. 규제개혁 등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한 법령의 발굴·정비

6. 법령정비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

7.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하여

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

하지 않는 사항

⑤ 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

령 정비

2. 국민 제안 사항 등 국민 생활

에 불편을 주는 법령의 발굴

· 정비

3.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4. 법령 용어·문장 순화 업무

의 총괄·조정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수립

6.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개발

⑥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2.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3.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의 수립

4. 법령 품질 개선을 위한 법령의 조사·연구

5. 불합리한 법령의 발굴·정비 지원

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에 따른 협업체계 운영 및 일괄정비 지원

7. 그 밖에 법령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⑦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제9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법제교육과, 행정규칙심사정비팀 및 법령용어순화팀을 둔다.

② 삭 제

③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2.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 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3. 훈령·예규 등의 사전·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4. 훈령·예규 등에 대한 정비 과제의 정비현황 점검·관리

5.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관리

6. 훈령·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관리

7. 훈령·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운영

8. 그 밖에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법령정보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

로 한다.

④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및 법령용어순화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3.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개정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5.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시행
6. 법령 통합·분리 기준의 수립·시행
- 7.·8. 삭제
9.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연구
10. 서울청사, 과천청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

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령정보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운영
7.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8.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9.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지원센터의 운영

11. 정부 내 법령(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
12. 규제혁신·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
13. 신기술·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지원
14. 법령 검토·지원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연구 등 관련 업무
15. 그 밖에 법제 지원과 관련된 업무
- 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2.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운영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

1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11.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
12. 처 내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처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4.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총괄
15.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
16.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7.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제공
19.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0. 그 밖에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4.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및 법제정보자료 제공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상
담

6.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
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문

7.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
개정 사항 통보

8.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
관리

9. 자치법규 입안 기준 연구·
수립

10. 그 밖에 자치법제지원에 관
한 사항

⑦ 삭 제

⑧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
교육 계획 수립·시행

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보급

⑤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

2. 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
비스의 구축 및 운영

3.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법령
정보의 디지털화

4. 법령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
체계의 구축·운영

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2.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
운영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

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⑨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2. 훈령·예규 등에 대한 정비 과제의 정비현황 점검·관리

3.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4. 훈령·예규 등의 사전·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5. 훈령·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관리

6.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관리

7. 훈령·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운영

⑩ 법령용어순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 용어·문장 순화 업무

4.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및 법제정보자료 제공

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상담

6.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문

7.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개정 사항 통보

8.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관리

9. 자치법규 입안 기준 연구·수립

10. 그 밖에 자치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⑦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 교육 계획 수립·시행

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보급

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의 총괄 · 조정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수립

3. 어려운 용어 · 문장의 법령에의 사용 방지

4. 현행 법령 내 어려운 용어 · 문장 발굴 · 정비

5. 법령 용어 · 문장의 개선 · 연구

6. 법령 용어 · 문장 순화를 위한 체계 · 구조 연구

7.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 · 개발

<신 설>

<신 설>

연구 · 개발 및 운영

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제교육 지원

7. 법제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한시조직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①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법제자문1담당관과 법제자문2담당관을 둔다.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제자문1담당관 및 법제자문2담당관은 각각 부이사관 또

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창구 운영 및 자문 처리절차 총괄

3.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법제자문2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 주요 국정현안 등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수행

5. 자문 사례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연구

⑤ 법제자문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자문 수행

2.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자문 수행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 자문 수행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연구 등 관련 업무

5. 법령안에 대한 입안 지원 업무

6.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40</u>	<u>246</u>	+6
·	·	·	
·	·	·	
일반직 계	<u>239</u>	<u>245</u>	+6
·	·	·	
·	·	·	
서기관	<u>25</u>	<u>26</u>	+1
·	·	·	
·	·	·	
행정사무관	<u>85</u>	<u>89</u>	+4
·	·	·	
·	·	·	
행정주사보	<u>3</u>	<u>4</u>	+1
·	·	·	
·	·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40</u>	<u>246</u>	+6
•	•	•	
•	•	•	
일반직 계	<u>239</u>	<u>245</u>	+6
•	•	•	
•	•	•	
서기관	<u>25</u>	<u>26</u>	+1
•	•	•	
•	•	•	
행정사무관	<u>84</u>	<u>88</u>	+4
•	•	•	
•	•	•	
행정주사보	<u>4</u>	<u>5</u>	+1
•	•	•	
•	•	•	